

IV 체류관리제도 · 외국인주민기본대장제도 · 결혼 · 이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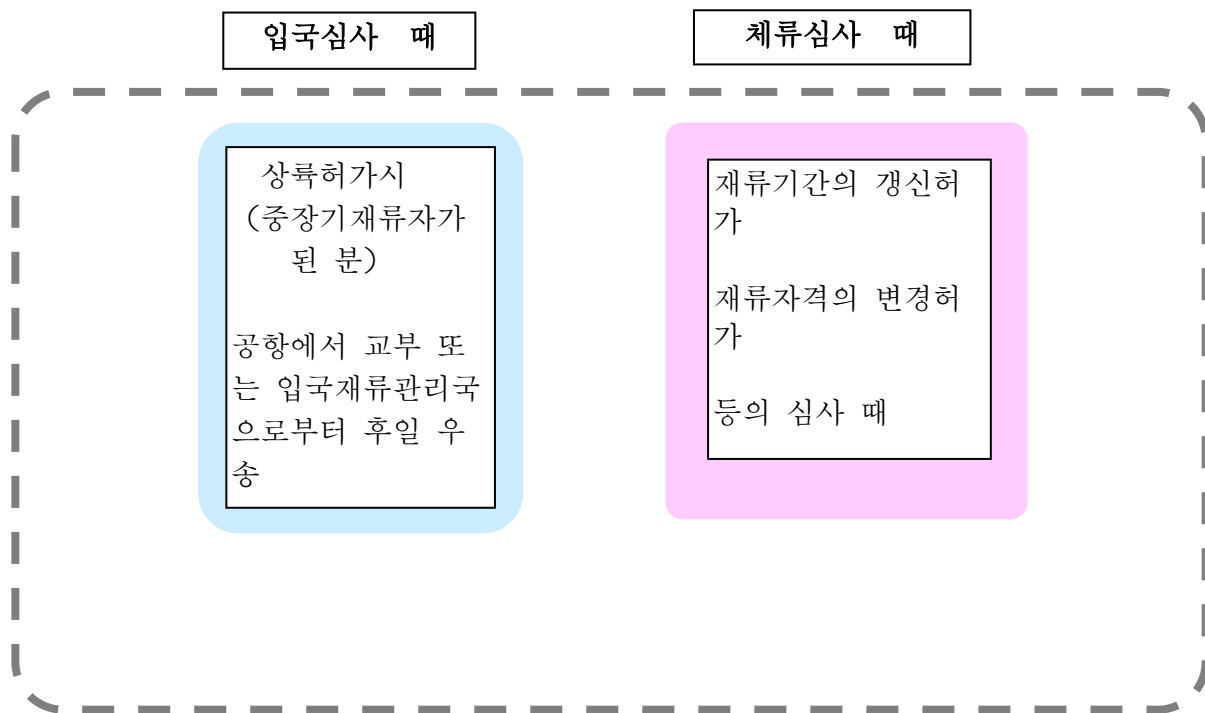
IV-1 체류카드

체류카드는 입국관리법상 재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에게 교부됩니다.

체류카드가 교부되는 「중장기재류자」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을 말합니다.

- ① 「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이 정해진 분
- ②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이 정해진 분
- ③ 「외교」 또는 「공용」의 재류자격이 정해진 분
- ④ ①에서③의 외국인에 준하는 분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분
- ⑤ 특별영주자
- ⑥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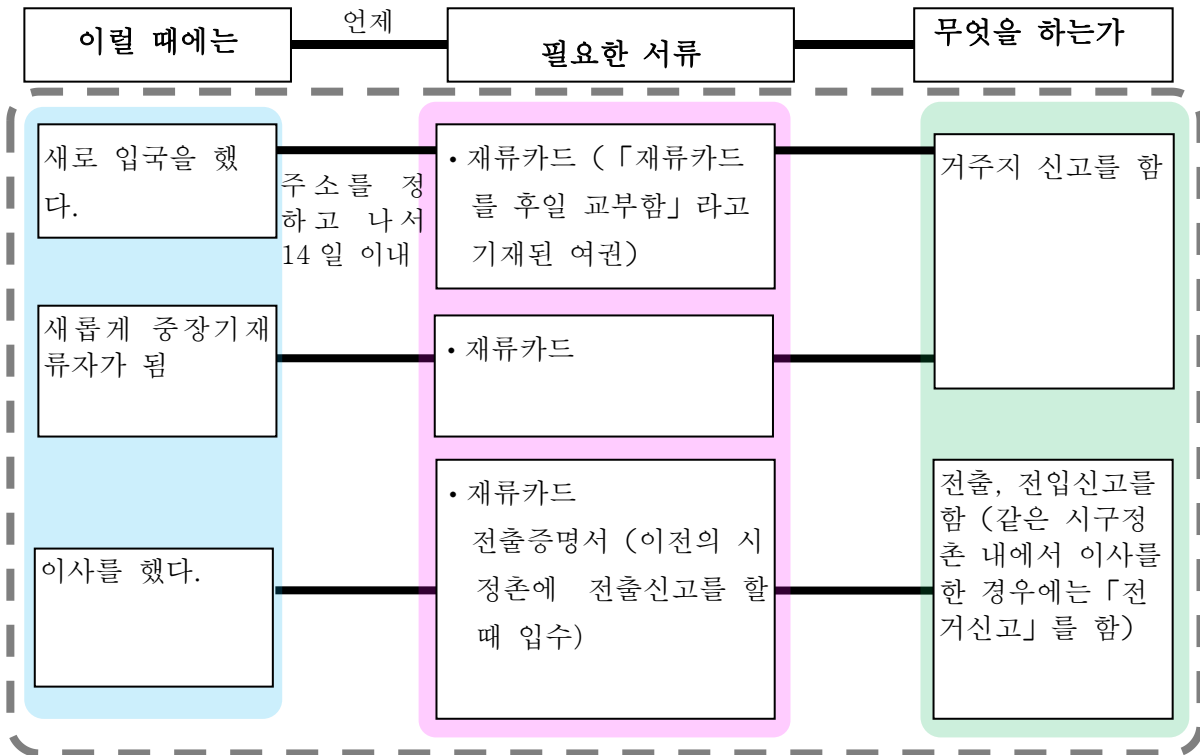
1. 체류카드 교부



체류카드는 신규로 상륙허가를 받았을 경우,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체류기간의 갱신허가 등의 심사 때 교부됩니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하셔야 합니다.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할 경우,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16세 미만의 분은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시구정촌에서의 수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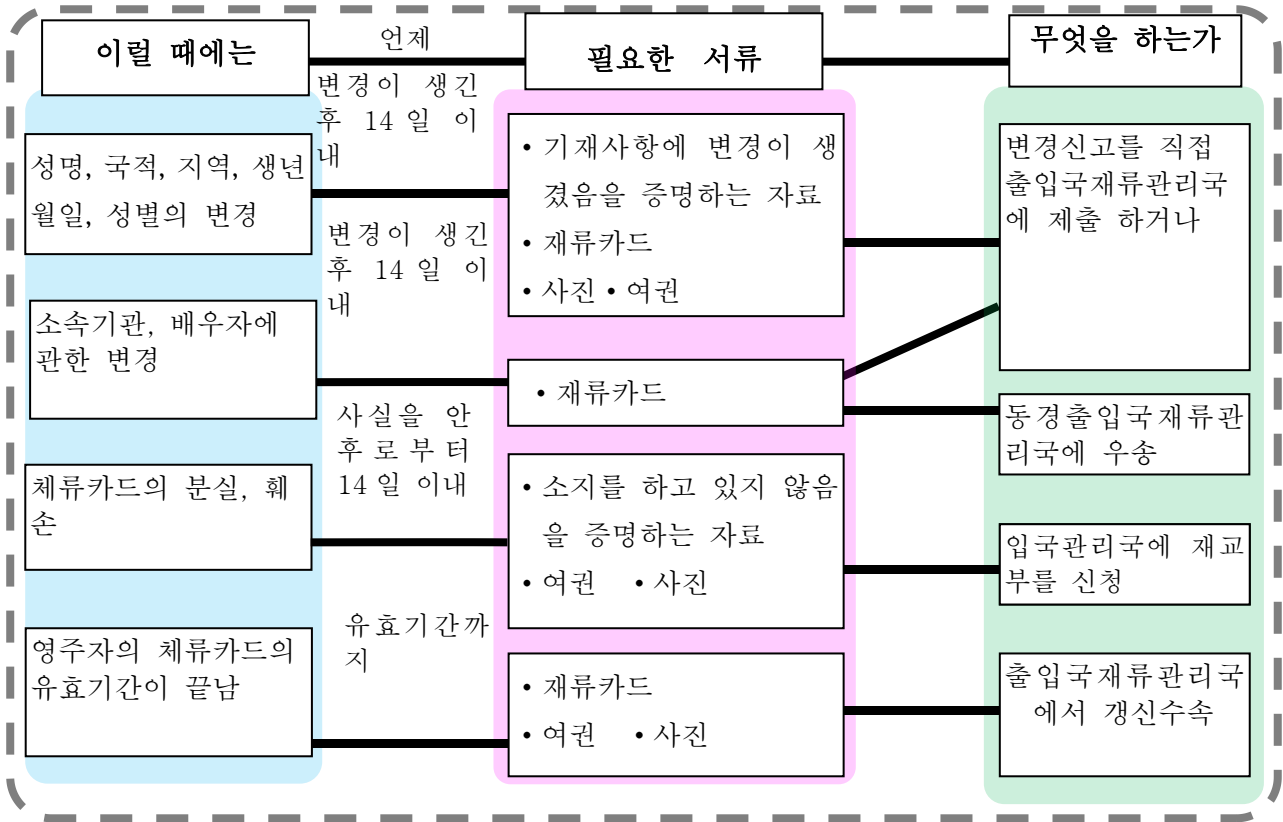


간사이공항,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츠부공항, 신치토세공항, 히로시마공항, 후쿠오카공항에서는 상륙허가에 의해 중장기재류자가 된 경우,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그 외의 공해항으로 입국할 경우, 귀하가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신고를 한 후 재류카드가 귀하에게 우송됩니다.

재류카드는 얼굴사진, 성명, 국적, 지역,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체류자격, 체류기간, 취로제한의 유무,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거주지에 관한 수속은 시구정촌에 신고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전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전출신고를 내고, 그 후 새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시구정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 때, 재류카드와 함께 전입·전거신고를 하면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거주지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의 수속



(1) 변경신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성명,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이 바뀌었을 경우는 14일 이내에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당신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취로를 위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유학」 등 배우기 위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 (고용처, 학교 등) 이 바뀐 경우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하거나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 (*) 에 우송합니다. 만일 당신이 배우자로서 「가족체재」, 「일본인의 배우자등」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 보낼 곳 〒108-8255 도쿄도 미나토구 코우난5-5-30

동경출입국재류관리국 체류관리정보부문 신고접수 담당

(2) 재류카드의 재교부

재류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소방서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직접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3) 영주자등의 재류카드 갱신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수속에 관해서는 16세 이상의 영주자,또 한 고도전문직 2호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2개월 전부터, 16세 미만으로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세 생일까지인 경우에는 16세 생일로부터

6 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6 세 이상의 영주자 이외의 중장기체류자의 재류카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4. 외국인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

외국인도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세대주의 성명 등 이외에 국적, 지역,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또한, 재류카드에는 통칭명은 기재되지 않지만, 주민표에는 통칭명 기재란이 있습니다. 「주민표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주민표는 관광 등의 단기체재자 등을 제외하고 적법에 의해 3 개월을 넘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거주지가 있는 분에 한해 작성됩니다. 중장기체재자 등 다음과 같은 분은 주민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중장기체재자
2. 특별영주자
3.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
4. 출생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에 따라 거주지 시구청촌에서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로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이 경과체재기간의 60 일을 넘게 일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생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의 취득신청을 합니다. 이 재류자격취득허가를 받아 중장기재류자가 되면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5. 마이넘버 제도

개인번호 (마이넘버) 는 12 자리로 되어있으며 일본에 주민표가 있는 사람 모두 받습니다. 마이넘버는 개개인이 다른 번호이며 원칙적으로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국내에서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일본에서 처음 주민표를 만들고 2, 3 주 지나면 주민표를 만든 주소로 마이넘버 통지서 (「통지카드」) 가 우편 (간이 등기) 으로 배달됩니다. 또 희망자에게는 「개인번호카드 (마이넘버카드)」가 교부됩니다. 「통지카드」 (종이, 사진 없음) 나 「마이넘버카드」 (IC 카드, 사진 있음) 모두 「주소」나 재류카드상의 「성명」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4 일 이내에 시정촌 창구에서 카드에 새로운 정보를 기재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류기간 갱신 등으로 재류기간이 변경된 경우,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변경 수속도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카드의 유효기간 변경수속은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3 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종합 프리다이얼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응대)

* 통지카드, 마이넘버카드, 분실·도난에의한 마이넘버카드 일시정지 ☎0120-0178-27

* 마이넘버 제도, 넘버포털에 관한 내용 ☎0120-0178-26

(영어 이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9시 0분 ~ 오후 8시까지 응대)

[URL](https://www.digital.go.jp/policies/mynumber/) <https://www.digital.go.jp/policies/mynumber/>